##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0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이병진・박 정・김한규

윤후덕 • 정성호 • 소병훈

이훈기 • 권향엽 • 노종면

이상식 • 이원택 • 서삼석

문대림 · 김문수 의원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처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고, 법 집행 시에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수목진료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8).
- 나.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목 진료사업의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 다. 나무병원에 종사중인 수목치료기술자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21조의13제1항).
- 라.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17 신설).

법률 제 호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의 제목 중 "부정행위자"를 "부정행위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림청장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제4항 중 "한다"를 "하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지체 없이 해당 수목진료 사업의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

8항"으로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⑥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이 제5항에 따라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수목진료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무병원으로 본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 1.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발주자로부터 사업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 2. 제1항제1호·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제21조의13의 제목 "(나무의사의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나무의사"를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로 한다.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17(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목진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수목진료 기술 개발 및 연구
  - 2. 수목진료 컨설팅 및 모니터링
  - 3.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시험연구
  - 4. 그 밖에 수목진료 활성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 ⑤ 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의5 중 "나무의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	제21조의8( <u>부정행위자 등</u> 에 대한
지)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	조치) <u>①</u>
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	
에서 <u>부정행위</u> 를 한 응시자에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	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
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	
지한다.	
<u>&lt;신 설&gt;</u>	② 산림청장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
	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
	<u>다.</u>
<u>&lt;신 설&gt;</u>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

소 등)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u><신 설></u>

<신 설>

<u><신 설></u>

소	등)	1	$\sim$	3	(현행과	같음)
---	----	---	--------	---	------	-----

\_\_\_\_\_

\_\_\_\_\_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 병원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목진료 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있다.
- ⑤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이 제5항에 따라 수목진료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수목진료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무 병원으로 본다.
- ①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나무병원은 수목 진료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⑦ (생략)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① 제21조의13(보수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 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 치료기술자-----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 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사 업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 의를 받지 못한 경우
- 2. 제1항제1호·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로 한정한다) • 제5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처 분을 받은 경우
-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u> </u>
⑩ (현행 제7항과 같음)

-----나무의사와 수목

하다.

② ~ ④ (생 략)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신 설>

-----.

② ~ ④ (현행과 같음)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17(수목진료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수목 진료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를 수목진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목진료 기술 개발 및 연구
   수목진료 컨설팅 및 모니터 링
- 3.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시험 연구
- 4. 그 밖에 수목진료 활성화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57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지원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의사 또 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배치하여 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 1. ~ 1의4. (생 략)
-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 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u>나무의사</u>
- 2. · 3. (생략)
- ④ ~ ⑥ (생 략)

- 1. ~ 1의4. (현행과 같음)
- 1의5. -----

\_\_\_\_\_

<u>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u> <u>자</u>

- 2. · 3. (현행과 같음)
- ④ ~ ⑥ (현행과 같음)